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2023-001호

2023년도 제1차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
2023년도 제1차 『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』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**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**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27일

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

Ⅰ.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개요

※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'각 사업별 제안요청서(RFP)'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
구분	공고단위 (RFP 명)	지원규모	지원기간	지원 대상	과제구성 요건	선정예정 과제수 (이내)
백신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단	1. 필수예방접종 자급화	700~1,000백만원/년 (1차년도 525~750백만원)	2~3년이내 (1차년도 9개월)	산·학· 연·병	기업 참여 필수	3
	2. 미래대응·미해결	500~1,500백만원/년 (1차년도 375~1,125백만원)	2~3년이내 (1차년도 9개월)	산·학· 연·병	기업 참여 필수	11

Ⅱ. 신청요건

□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

○ 국·공립 연구기관
○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○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○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○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○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 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□ 신청 제한

○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 32조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 64조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

*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

*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**신청마감일로부터**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

※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-105호「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」참조

·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,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

Ⅲ. 신청 방법

□ 신청방법

○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에 접속 후 화면 우측 상단 메뉴에서 'R&D지원시스템 바로가기' 클릭

○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/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(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)

※ 연구자(연구개발기관)은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

※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'연구자 권한'으로 신청 가능

○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(전자인증)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

※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
사전등록 및 정보업데이트 (연구업적 등)	전산입력사항 입력	연구개발계획서 /첨부서류(hwp) 작성 및 업로드	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확인·승인	**연구개발과제 접수완료**
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	**연구책임자**	**연구책임자**	**주관연구개발기관장 (기관담당자)**	

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 안내서 참조

□ 서류제출기한

공고단위 (RFP)	연구책임자 과제신청 (전산입력) 마감일시	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(또는 공문제출) 마감일시
공통	2023. 1. 26 (목) 12 : 00	2023. 1. 26 (목) 15 : 00

※ **신청 마감 시간(12:00) 엄수 (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)**

※ 공고단위(RFP)별 발표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'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(www.htdream.kr)'에 공지함

※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Ⅳ. 관련 법령 및 규정

□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」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등

※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

Ⅴ. 기 타

□ 연구개발비 산정기준

○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(2022.12.21. 일부개정)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

○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

항목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	총 연구개발비 대비 50% 이상	총 연구개발비 대비 30% 이상	총 연구개발비 대비 25% 이상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	부담액의 15% 이상	부담액의 13% 이상	부담액의 10% 이상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허용 비목	가.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. 연구시설·장비비 다. 기술도입비·연구재료비		

○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견·중소기업이 청년인력(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)을 1명 이상 신규채용 시,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

-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 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

※ 단, 총 연구수행기간 내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, “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(5억원당 1명)” 초과 채용 시 적용
(예 : 5억원 과제 - 2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, 10억원 과제 - 3명 고용시 2명 인건비 감면)

□ 연구시설・장비 도입 시 유의사항

○ 연구시설・장비(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)의 도입 심의

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'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(3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)'를 작성・첨부하여 '과제평가단'의 심의를 받아야 함

○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・장비를 구축할 경우 '국가연구시설・장비심의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'에서 심의 실시(선정과제 별도 안내)

□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

○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해당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함

□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

○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'연구성과 관리・유통 전담기관'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,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・기탁하여야 함

□ 기술료 제도 안내

○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

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

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
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 안내서 참조

Ⅵ. 문의처

구분	공고단위(RFP)	사업내용(RFP) 안내		평가일정/절차 안내	
		담당자	연락처	담당자	연락처
백신실용화 기술개발 사업단	1. 필수예방접종 자급화	김민하	blossoming_45 @yonsei.ac.kr 02-2228-0339	이다형	dhyon22 @yonsei.ac.kr 02-2228-0340
	2. 미래대응·미해결				

*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